

한화투자증권 인권경영 행동규범

1. 정의

- 가.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 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나. “임직원”이란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 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주주와 투자자, 협력업체, 국가와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2. 적용범위

본 규범은 회사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3. 이해관계자별 인권정책

가. 임직원

- 1) 임직원은 본 규범을 포함한 관련법령 및 내규, 윤리규정 등을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2) 임직원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 3)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 4)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5)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나. 고객

-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최고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다. 주주와 투자자

- 1) 책임·투명·윤리경영체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주주 및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모든 주주 및 투자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라. 협력업체

- 1) 협력업체 임직원의 인권은 회사 임직원의 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2)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청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 3) 협력업체와의 거래 및 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4)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소속 임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 5)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협력업체의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관리한다.

마. 국가와 지역사회

-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2)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취약계층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3)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진출한 현지 국가 구성원의 인권과 더불어 법령·관습·문화를 존중한다.

4. 인권교육

- 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인권교육은 회사의 연간 교육 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인권침해 구제 절차

- 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고충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 나. 고충전담조직은 신고 접수 시 신고 내용 및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여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고충전담조직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고충전담조직 및 회사는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권영향평가

가. 회사의 경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인권영향평가는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개정 이력

2022년 6월 30일 제정